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담 당 자	송 희 경 사무관 (02-2100-2673)	

**제 목 :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
 「자본시장법 개정안」 국회 본회의 통과**

- ◆ '21.3.24.(수)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「자본시장법 개정안」
 (4개 개정안*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) 국회 본회의 통과
 * 유동수 의원안 · 김병욱 의원안 · 송재호 의원안 · 강민국 의원안
- ⇒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, 공포일
 로부터 6개월 후 시행 ('21.10월 시행 예상)
- ◆ 신뢰받는 사모펀드 시장 조성을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
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
 - 한편,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통해 기업구조
 조정·성장자금 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기대

1

개 요

- '21.3.24.(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
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은 국회 발의된 4개 의원안*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,
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
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* 유동수 의원안('20.7.24. 발의) · 김병욱 의원안('20.9.28. 발의) · 송재호 의원안
 ('20.12.22. 발의) · 강민국 의원안('21.2.9. 발의)

-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*됩니다. (법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)
-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,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.

※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진행 경과

① '19.12월 DLF 대책 후속조치 : 「자본법 시행령*」 개정 완료('21.2.9. 시행**)

- * 최소투자금액 상향(1억 → 3억 이상), 공모기준 강화,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도입 등
- **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은 공포후 3개월 후인 '21.5.10. 시행 예정
- ※ [참고]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'21.2.2. 보도)

② '20.4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: 하위규정(시행령·규정) 개정·시행 완료*

- * 복층투자구조·TRS 감독 강화, 불건전영업행위 규율 강화,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 운용 금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('21.3.16. 시행) 및 감독규정 개정('21.3.18. 시행)
- ※ [참고]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'21.3.9. 보도)
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·시행('21.3.18. 보도)

2 |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

(1)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

-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펀드 운용목적(전문투자형·경영참여형)에서 투자자의 범위(일반·기관전용)로 변경*됩니다.

※ 사모펀드별 운용주체 및 투자자 범위

	일반 사모펀드	기관전용 사모펀드
운용주체	전문사모운용사(금융투자업자)	업무집행사원(GP, 非금융투자업자)
투자자	일반투자자* + 전문투자자 * 최소투자금액(3억원)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	전문투자자 중 일부* * (안) 연기금, 금융회사 등(개인투자자 제외)

-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는 상이 하지만, 운용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(☞ (3))

(2)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

□ “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”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.

※ 자체 위험관리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

① 사모펀드 판매·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됩니다.

- 사모펀드 투자권유·판매시 **핵심상품설명서***를 제공하고,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**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****해야 합니다.

* 투자전략, 주요 투자대상자산,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 설명서(자산운용사 작성)

** 불합리한 펀드운용 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→ 운용사 불응시 감독당국 보고

② 수탁기관(은행, PBS 증권사)의 사모펀드 감시의무가 강화됩니다.

-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**법령·규약·설명서 준수여부**를 감시하고, **불합리한 운용지시**가 있는 경우 **시정요구**를 해야 합니다.
-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**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(전담중개업무) 증권사**는 **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·관리**해야 합니다.

③ 사모펀드 가치평가·운용 등 관련 **공정성·투명성**이 제고됩니다.

- **일정규모 이상*** 사모펀드에 대해 **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*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외부감사가 의무화**됩니다.

* ①자산 500억원 초과, ②자산 300~500억원 + 6월내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

- 투자자가 운용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**자산운용보고서** 제공(분기별) 및 **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**가 **의무화**됩니다.

④ 만기 **미스매치 방지** 등을 위한 **유동성 관리**도 강화됩니다.

- **비시장성자산(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) 비중이 50% 이상인 경우** 수시 환매가 가능한 **개방형 사모펀드 설정**이 **금지**됩니다.

(3)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

□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*으로 일원화됩니다.(☞ 참고 2)

* 분산투자 규제 없음, 경영권 참여의무 없음, 순재산의 400%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 가능, 대출 가능(단, 개인대출은 금지) 등

※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효과

- [기관전용 사모펀드] 현재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%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 폐지, 대출 가능
- [일반 사모펀드] 현재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유지(10% 초과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). 단,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(☞ (2) 관련)

○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규제*(현재 주로 경영참여형에 적용)는 일반·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모두 적용됩니다.

* 상출제한집단 계열 사모펀드의 계열사 편입시 5년내 지분처분 의무(기관전용) 또는 10%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(일반 사모펀드) 등

(4) 전문사모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(GP) 관리·감독 강화

□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됩니다.

○ 자기자본·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(예: 6개월)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·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*됩니다.

* 등록업(사모운용사 및 자문·일임업자)에 공통 적용. 단, 투자자보호 이슈가 존재하는 등 신속한 퇴출이 부적합하거나 제재가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판단

□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(GP) 감독·검사 권한이 강화됩니다.

○ 금융당국의 GP 상시감독을 위한 변경등록 의무* 및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한 GP 검사권**이 신설됩니다.

*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, 매년 1회 재무제표 제출

** (현행)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권 규정 → (개정안) 펀드外 금융시장 안정 및 거래질서 유지 목적의 펀드 운용주체(GP)에 대한 검사권 신설

(5)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 개선

□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'49인 이하'에서 '100인 이하'로 변경됩니다.

※ 미국의 경우 ①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에 제한이 없고, ②소수투자자 사모펀드(일반투자자 참여 가능)의 투자자수는 100인 이하

○ 다만,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 규제*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.

※ 사모펀드는 ①공모규제[일반투자자 49인 이하]와 ②투자자수 규제[일반투자자 + 전문투자자 (연기금·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는 제외) 49인 이하]가 중첩 적용

→ ②투자자수가 확대되더라도 ①공모규제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

⇨ 투자자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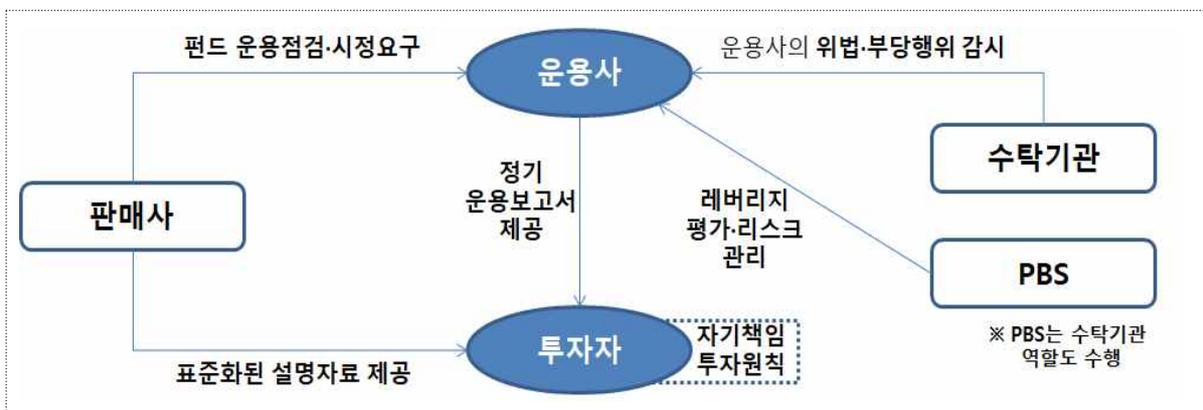
3

기대효과

①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모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.

○ “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”의 판매·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·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됨에 따라,

-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고, 펀드 설정·운영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②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.

○ 부분적인 자산운용 전략만 가능했던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어, 모든 사모펀드는 지분·메자닌 투자, 금전차입, 대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지분투자 의무* 폐지 등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지분만으로 기업가치제고 등을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지고,

*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% 이상 취득의무

- 그간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(Private Debt Fund, PDF) 운용이 일반·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됩니다.

○ 이를 통해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개선 자금공급, 창업·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가능 사례(예시)

- (현행) 국내 주요 유니콘 기업(기업가치 1조원 이상) 투자자의 95%가 해외투자자 → (향후)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의 유니콘 기업 투자 활성화 가능
- (현행) 의결권 있는 주식 10% 이상 취득 의무 등으로 대기업 투자 등에 한계 → (향후) 해외자본에 대응하여 국내자본의 대기업 투자·경영참여 활성화 가능

③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·감독이 가능해집니다.

○ 사모펀드를 투자자의 범위로 재분류하고, “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”에 관한 시장규율이 강화됨에 따라,

-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감독자원을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 관리·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.(’21.10월 예상)
 -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·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* [예상일정] 6~7월중 입법예고 및 업계 의견청취 → 8~9월중 규제위·법제처 심사 → 10월중 국무회의(시행령)·금융위원회(규정) 의결·시행
- 한편, 이번 법개정안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체계개편이 정책 의도에 맞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,
 - 금감원·금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독강화 및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,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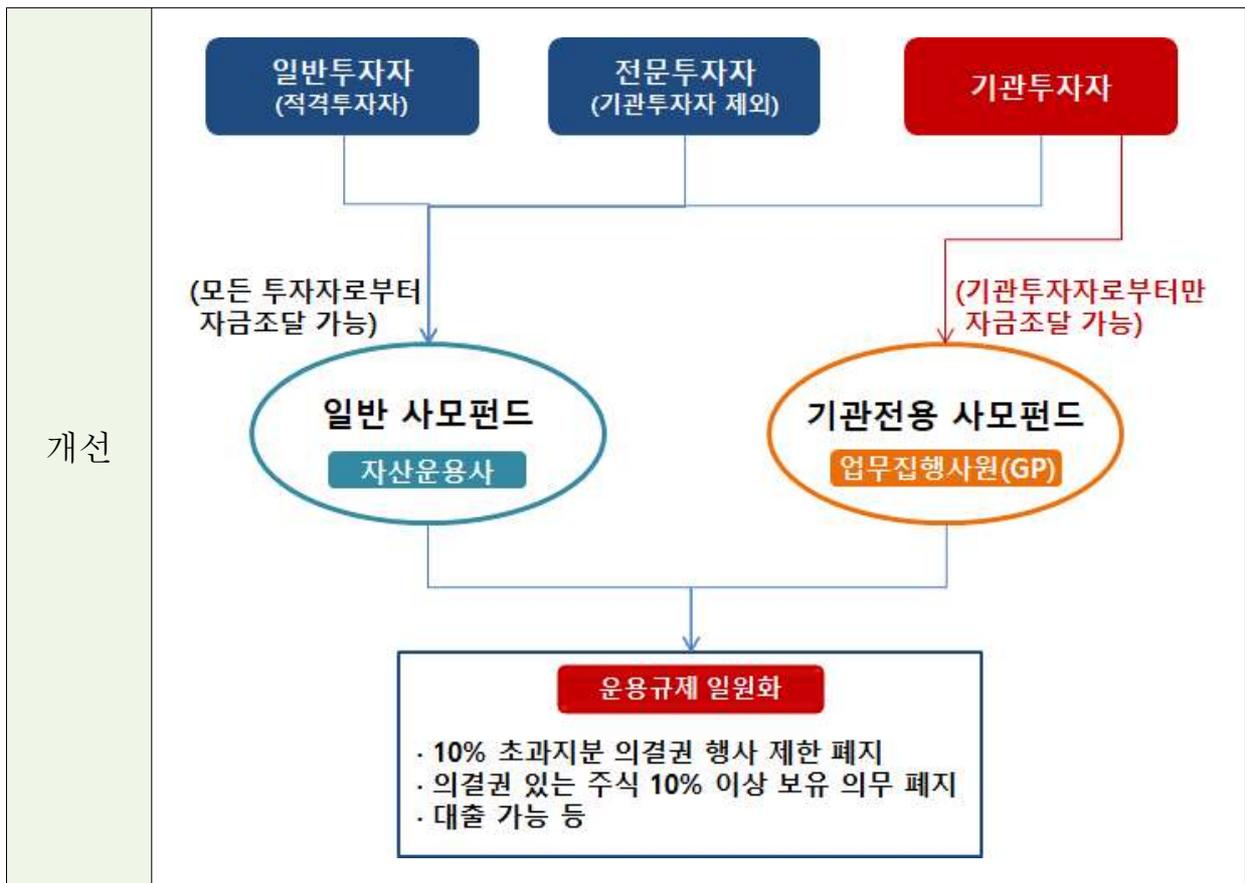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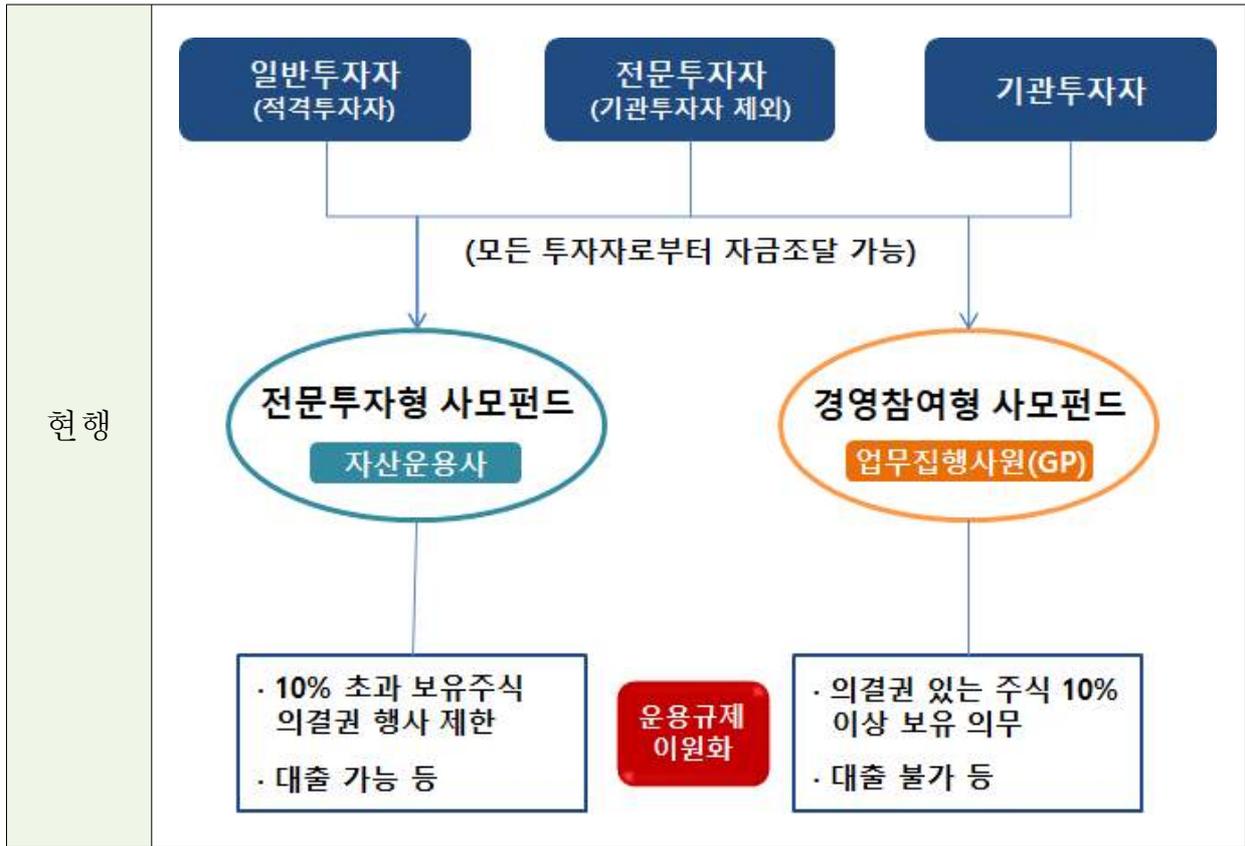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참고 1

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따른 비교



구 분		현 행		개선(안)
		전문투자형(헤지펀드)	경영참여형(PEF)	운용규제 일원화
운용사		전문사모운용사 (금융투자업자)	업무집행사원 (GP, 非금융투자업자)	일반 사모펀드 : 사모운용사 기관전용 사모펀드 : GP
운용 규제	경영권 참여	- 해당 없음	- 펀드자금 50% 이상 2년내 주식 투자 - 의결권 있는 주식 10% 이상 취득 -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	폐지
	의결권 제한	- 10%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	- 해당 없음	폐지 * 단, 경영권 참여(10% 이상 취득) 시점으로부터 15년 이내 해당 지분 처분의무
	레버리지 규제	- 순재산 400% 이내 (금전차입, 대여, 채무 보증, 파생상품 투자 등)	- PEF 자산 10% 이내 (단, SPC를 활용할 경우 300%까지)	- 순재산 400% 이내 (금전차입, 대여, 채무보증, 파생상품 투자 등)
	대출	- 대출 가능 (단, 개인대출 금지)	- 대출 불가	- 대출 가능 (단, 개인대출 금지)
검사· 감독	업무보고서 제출·공시	- 분기별 업무보고서 금융위 제출 - 업무보고서 지점· 영업소 비치, 홈페이지 공시 등	- 해당 없음	- 보고의무 유지 ※ 업무집행사원(GP) :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없음
	펀드 운용현황	- 펀드별 레버리지 현황 보고 (파생상품 매매 현황,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, 금전차입 현황)	- 펀드별 레버리지 현황 보고 (여유자금 운용 현황, 차입 및 채무보증 현황)	- 펀드별 운용현황 보고 (펀드구조, 투자대상자산, 투자위험 등 보고사항 확대) * 시행령 개정으로 '21.6월말 보고부터 적용 ※ 기관전용 사모펀드 : 레버리지 현황 보고
	검사· 감독 권한	- 펀드와 운용사 모두 검사·감독 가능	- 법령상 펀드 검사· 감독권 명확, 반면 GP 검사· 감독권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	- 펀드와 운용사 모두 검사·감독 * 업무집행사원(GP)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,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검사·감독 가능
상출제한집단 관련 규제		- 해당 없음 (단, 운용규제로 10% 초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)	- 상출제한집단 계열 PEF가 계열사 편입시 5년내 지분처분 등	* 상출제한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펀드 : 계열사 편입시 5년내 지분처분 의무 유지 * 상출제한집단 계열 일반 사모 펀드 : 10%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유지 등
지주회사 특례		- 해당 없음 (다른회사 지배 불가)	- 다른회사 지배시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 10년 유예	- 다른회사 지배시 지주회사 관련 규제적용 10년 유예